금융감독원	**보 도 참 고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3.6.28.(수) 조간	배포	2023.6.27.(화)

담당부서	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	책임자	실 장	권영발	(02-3145-5600)
		담당자	팀 장	김대영	(02-3145-5602)

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,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 적발

- '매수의견' 조사분석자료 공표 前 매수, 공표 後 매도 수법(부당이득 약 5.2억원) -

1 수사 결과

□ **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**(이하 '금감원 특사경')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**증권사 직원**의 **부정거래 혐의**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

○ 최근 증권사 **애널리스트 1명**을 **'기소의견'**으로 검찰(남부지검)에 **송치**('23.6.23.)하였습니다.

※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(Fast-track)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,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

□ 이번에 **적발된 애널리스트**는 **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**에 근무하면서 **담당 분야 '베스트 애널리스트'**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**상당한 영향력**을 **보유**한 자로

○ **'매수의견'**이 담긴 **자신의 조사분석자료**를 **공표하기 전**에 **차명 증권계좌**를 이용하여 **해당 주식**(22개 종목)을 **매수**하였다가

자료 공표 후에 **주식을 매도**하는 방법으로 **약 5.2억원의 부당이득**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(※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)

<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>

2 수사의 시사점 및 향후 계획

□ **애널리스트**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**조사분석자료**를 **작성·공표**하여 **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**하는 역할을 하므로 **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**이 **요구**되는 직업임에도

○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**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**한 것은 **자본시장의 '신뢰'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**입니다.

□ 더욱이 최근 동일한 유형의 **애널리스트** 관련 **불공정거래 사건**이 **반복적**으로 **발생***하고 있는바,

○ 증권사들은 **문제의 심각성**을 인식하고 **불공정거래 예방**을 위해 **조사분석자료 심의·공표 절차 개선** 등 **내부통제**를 **강화**해야 합니다.

*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유형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'기소의견'으로 송치하였음 [①'21.4. H사 애널리스트 징역 3년 확정, ②'21.12. D사 리서치센터장 징역 1.5년 확정]

□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**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**에 대해 **철저한 수사**를 통해 **엄정 대응**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